

2017

강원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시책·제도



강원도

차 례



“ 총 6개 분야, 78개 시책 ”

I 지속성장을 위한 강원경제 기반조성 / 5

1. 강원상품권이 2017년 1월부터 유통됩니다.	7
2. 중소기업인 대상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8
3. 청·장년 정규직 채용시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합니다.	9
4. 강원일자리공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10
5. 강원 일자리안심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11
6. 이전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합니다.	12
7.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인재 급여를 지원합니다.	13
8.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14
9.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강원곳간’을 확대 운영합니다.	15
10. 사회적경제 「대표기업」을 확대 육성합니다.	16
11. 강원 바이오 스타기업을 육성합니다.	17
12. 도내기업의 신설·증설 지원을 확대합니다.	18
13.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19
14. 청년창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21
15. 내수기업의 수출 첫걸음 사업을 지원합니다.	22
16. 강원무역이 도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23
17. 대형 유통업체 상품기획자(MD)와 상담기회를 드립니다.	24

II**나눔과 배려에 기초한 교육·복지****/ 25**

1. 특성화 고등학교의 도제교육을 지원합니다.	27
2.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합니다.	28
3. 읍면동 복지허브화 ‘행정복지센터’가 찾아갑니다.	29
4.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를 지원합니다.	30
5.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31
6.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합니다.	32
7. 효(孝) 119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33
8. 출산가정에 산후 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	34
9.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합니다.	35
10.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전계층 지원합니다. ...	36
11.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지원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37
1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38
13.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39
14. 어린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40
15. 저소득층의 암 조기검진을 지원합니다.	41

III**함께 잘사는 농어촌 육성****/ 43**

1.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합니다.	45
2. 6차산업 인증사업체 유통·마케팅 채널이 다양해집니다.	46
3. 곤충 사육농가를 지원합니다.	47
4. 발직불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 지원합니다.	48
5. 청년농업인 성공창업을 돕습니다.	49
6.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에 가솔린 기관이 포함됩니다.	50
7. 폐통발 어구 수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51
8. 불가사리 수매사업 단가가 상향됩니다.	52
9. 임산물 재배를 위한 행정처리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53

IV**Green·Safe 강원도 만들기****/ 55**

1.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 정책이 확대됩니다.	57
2.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58
3. 숲해설가 운영방식이 전문업체 위탁으로 바뀝니다.	59
4.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이 가능해집니다.	60
5.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지원금 받아주세요.	61
6. 사업장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62
7. 물환경보전을 위한 수질오염물질을 추가 지정합니다.	63
8. 빈용기 보증금액이 인상됩니다.	64
9.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선진화됩니다.	65
10.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기준이 완화됩니다.	66
11.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67
12. 조류 예방조치를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합니다.	68
13. 국내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69
14.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합니다.	70
15.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이 완화됩니다.	71
16.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72

V**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주민 지원****/ 73**

1. 지식재산 소송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75
2. 우수상품 강원도 브랜드관 입점을 지원합니다.	76
3. 강원여행 파트너! 「투어강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7
4. 동계올림픽 대비 전도민 ‘스마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78
5. 효도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79
6.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장애인 콜센터) 연장 운영	80
7.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81
8.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조건이 변경됩니다.	82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달라집니다.	85
2. 마약류 관리가 전산화되어 시행됩니다.	86
3.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87
4.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기관이 변경됩니다.	88
5. 소방시설 고장·방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89
6. 소방시설법령이 이렇게 바뀝니다.(소방시설 적용 강화 등)	90
7. 생활자격·면허 발급서비스가 개선됩니다.	91
8.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조끼 착용 및 승선자 명부 작성 의무화	92
9. 「수산물가공업통계」작성이 전산화 됩니다.	93
10. 민방위 이렇게 달라집니다.	94
11. 예비군 운영 이렇게 달라집니다.	95
12. 을지연습 이렇게 달라집니다.	96
13.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달의무화제도가 변경됩니다. ...	97

I

지속성장을 위한 강원경제 기반조성

1. 강원상품권이 2017년 1월부터 유통됩니다. / 7
2. 중소기업인 대상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 8
3. 청·장년 정규직 채용시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9
4. 강원일자리공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 10
5. 강원 일자리안심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 11
6. 이전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합니다. / 12
7.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인재 급여를 지원합니다. / 13
8.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14
9.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강원곳간'을 확대 운영합니다. / 15
10. 사회적경제 「대표기업」을 확대 육성합니다. / 16
11. 강원 바이오 스타기업을 육성합니다. / 17
12. 도내기업의 신설·증설 지원을 확대합니다. / 18
13.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 19
14. 청년창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 21
15. 내수기업의 수출 첫걸음 사업을 지원합니다. / 22
16. 강원무역이 도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 23
17. 대형 유통업체 상품기획자(MD)와 상담기회를 드립니다. / 24

1

지역경제 살리는 지킴이! 강원상품권이 2017년 1월부터 유통됩니다.

[자체사업]

사회적경제과 서비스산업팀(☎249-3389)

-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상품권이 유통됩니다.

■ 강원상품권(GangWon)은?

- 지역상권을 살리고 강원경제를 튼튼히 하여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발행
- 첨단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되어 매우 뛰어난 안전성
- 강원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류로 발행

■ 강원상품권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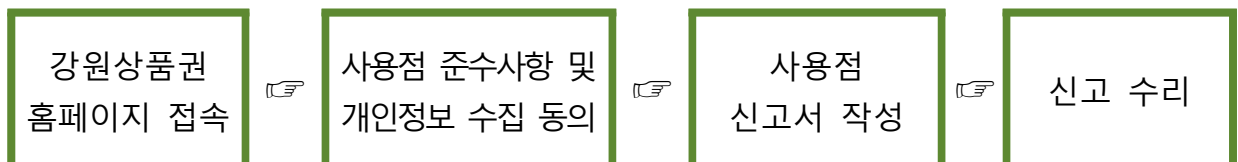
- 판매장소 : 도내 지정 NH농협은행(지역 농·축·품목농협 포함)
- 구매방법 : 현금 구매

■ 강원상품권은 어디서 사용하나요?

- 강원도내 모든 사용점(사용점 : 도내 사업자 등록업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사용 제외

■ 사용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신청 : PC, 스마트폰/강원상품권 홈페이지



- 사용점 신청안내 :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033-249-3389, 3231, 3219, 2851)

2

중소유통기업인 대상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경제진흥과 유통소비팀 (☎249-3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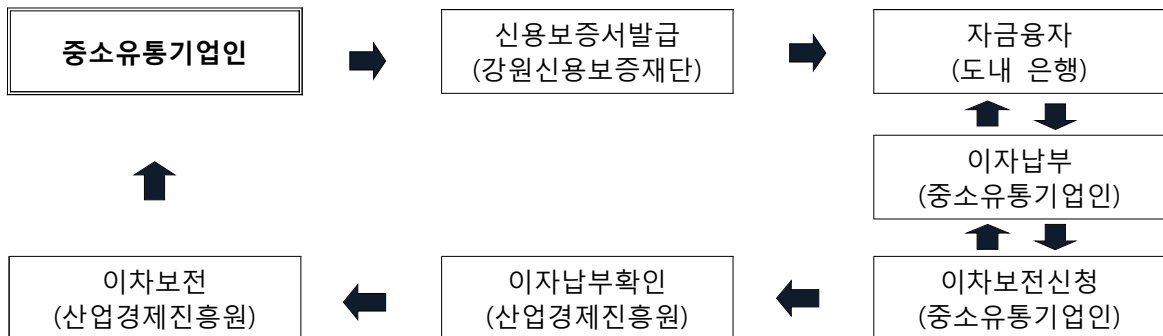
- 도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일반정책자금 융자업체의 대출이자 일부를 도비로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이차보전이란?

- 사업기간 : 2017 ~ 2019년
- 대출규모 : 60억원(출연금의 12배 강원신용보증재단 대출보증)
- 대출대상 : 도내 중소기업(1억원 한도내)
- 대출금리 : 2년거치 3년상환, 3.5%내외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 2년간 지원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차보전금 지급절차 :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위탁 시행



- 대출은행 : 도내 은행(협의 중)
- 지원시기 : 매 분기말(3,6,9,12월) 5일까지 신청순 접수 후 이차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도내 중소기업인의 대출이자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3 청·장년 정규직 채용시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일자리과 청년일자리팀(☎249-3452)

- 도내 청·장년 일자리의 안정적인 확대와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장년 정규직 채용 보조금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이란?

- 지원규모 : 416명 * 2016년 : 309명
- 지원대상 : 근로자수 5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 5천억원 이하 도내 업체
- 지원내용 : 도내 청·장년 정규직 신규채용시 월 100만원 6개월간 지원
* 청년 : 15세~34세, 장년 : 55세~64세
- 지원예산 : 2,500백만원(도비 1,000, 시군비 1,500)
- 신청절차 : 신규채용계획 중소기업에서 시군(일자리부서)에 신청

■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 분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시행시기
▪ 주소 기준	▪ 1. 1. 현재	▪ 공고일 현재	▪ '16. 9월 ~
▪ 1년 미만 근무 근로자 지원배제	▪ 2년간 지원배제	▪ 자발적 퇴사 증명시 지원배제 예외	▪ '17. 1월 ~
▪ 고용대상자	▪ 청·장년에 국한	▪ 경력단절여성 포함	▪ '17. 상반기 * 도 조례 개정 후 확정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명	▪ 기업당 최대 10명	
▪ 대상기업	▪ 2년 이상 도내 고용유지 기업	▪ 도내 이전기업의 경우 예외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구인기업 측면에서는 필요인력 확보와 경영 안정화에 도움
- 구직자 측면에서는 도내 기업의 취업기회 확대

4

강원일자리공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체사업]

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249-2778)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과 근로자 자산형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공제금 적립을 지원합니다.

강원일자리공제 지원사업이란?

- 지원인원 : 700명(청년내일채움공제 300, 내일채움공제 400)
- 지원기간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내일채움공제 5년
- 지원내용 : 핵심인력 및 기업 적립금 중 기업 부담분의 일부 지원
- 신청절차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 합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공제상품 : 공동적립 만기 후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으로 지급

상품 구분	지원인원	가입 기간	월공제금	납입금액(만원)			가입대상	
				근로자	기업	강원도		정부
청년형	300명	2년	50만원	12.5	7.5	5	25	정규직 전환 청년인턴
기본형	250명 (기존 100명 포함)	5년	34만원	10	14	10	-	중소기업 핵심인력
보장형	100명	5년	45만원	15	15	15	-	
확장형	50명	5년	60만원	20	20	20	-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상품 종류 : 기본형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상품 종류 : 4종으로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인원 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인원 700명 (2016년 가입 100명, 2017년 신규 600명)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자산형성으로 장기재직 유도
- 인력의 장기재직 및 기술력 향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5

강원 일자리안심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체사업]

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249-2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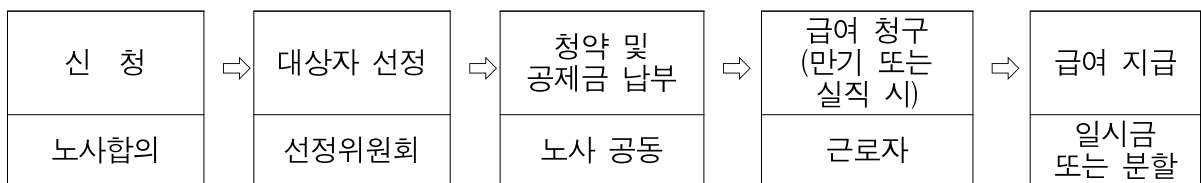
- 도내 기업에 재직하던 근로자의 실직에 대비, 재직시 공제금을 적립한 후 재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실직 시 지원합니다.

강원 일자리안심공제란?

- 가입대상 : 도내 기업체 근로자
- 가입기간 : 5년 만기
- 지원방법 : 근로자, 기업과 함께 공제금 적립
- 지급시기 : 만기 또는 실직 시(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 운영기관 : 전문기관 위탁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사 합의를 통해 공제금액을 결정하여 신청
 - 지원대상자 많을 경우 별도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 지원절차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불충분한 실업급여 보완으로 근로자 생활안정
- 일자리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근로의욕 제고

6

이전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투자유치과 국내투자유치팀 (☎249-2953)

- 도내 이전기업과 대학 등 교육기관을 연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도내 이전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전기업 채용박람회는 어떤 사업인가요?

- 장 소 : 원주시 (추후 확정)
- 운 영 : 박람회장 내 참여기업별 개별부스 운영 및 취업상담
- 세부내용 : 채용설명회, 기업 취업정보 제공, 부대 행사 등
- 주최·주관 : 강원도, 강원도이전기업협의회, 시·군, 도내 대학 등

■ 어떻게 참여 하나요?

- 구직자 : 신분증, 이력서 등 채용관련 서류 지참 후 행사 당일 참여
- 기 업 : 강원도이전기업협의회 또는 해당 시·군에 채용 계획 및 참가신청서 제출

※ 강원도이전기업협의회(41개 기업) : 기업이전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내에 있는 상시고용 30명 이상인 도내 이전기업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도내 청소년 및 청장년층에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이전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
- 도내 유치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지원을 통하여 유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내 조기정착 지원

■ 언제 개최 하나요? 2017년 중 (추후 확정)

7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인재 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일자리과 청년일자리팀 (☎249-3453)

- 도내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 청년인재 채용 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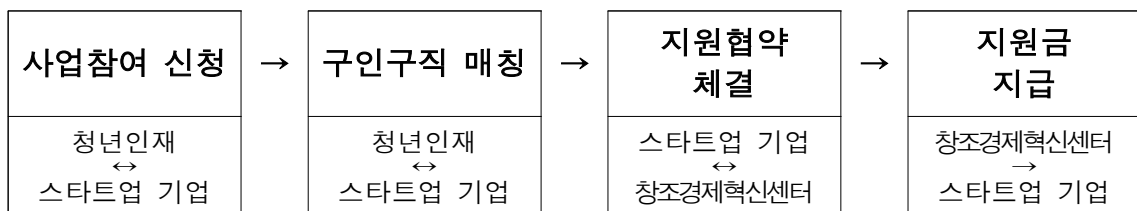
* 스타트업 기업 : 설립한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으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기업

■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 지원규모 : 25개 업체, 50명
 - 지원예산 : 300백만원(도비 100%)
 - 지원대상 : 청년인재와 매칭에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
 - 청년인재 :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5세 ~ 34세의 청년
 - 스타트업 기업 : 도내 주소(주사무소,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벤처 기업
 - 지원내용 : 업체별 최대 2인, 1인당 월 100만원, 6개월간 도비 지원
 - 우선지원 : 강원전략산업 관련 업체
 - 제외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창업제외 업종
 -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등
- ※ 기타 지원 사항은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관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원주사무소)
- 지원절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8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249-2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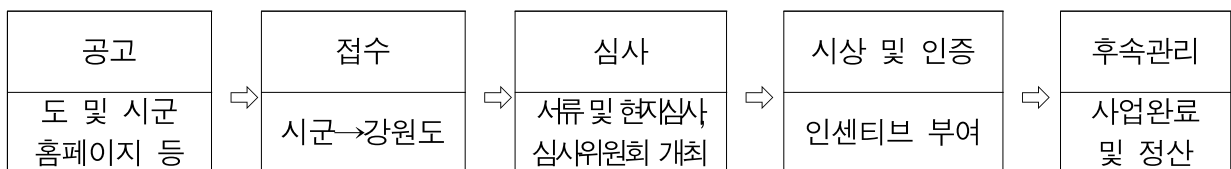
-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고용환경개선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고용우수기업 지원이란?

- 목 적 : 고용우수기업 발굴, 인센티브 부여로 해당 기업 사기진작
- 지원대상 : 도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하면서 일자리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 인증규모 : 매년 7~10개 내외 * 인증기간 : 2년간
- 지원내용
 - 도지사 인증패, 고용환경개선금(기업당 최대 2천만원 예정)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등 우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추천으로 강원도 및 시군에 심사서류 제출
- 지원절차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도내 기업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관심 및 동참 유도
- 근로환경개선 등 인센티브 부여로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9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강원곳간’을 확대 운영합니다.

[자체사업]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249-3224)

- 우리 지역 물품과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물품과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하기 위해 각 지역에 판매장(강원곳간)을 운영합니다.

■ ‘강원곳간’ 은 무엇인가요?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물품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판매장
- 품질 좋은 원재료 사용, 투명하고 정직한 제조공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강원도내 착한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

■ ‘강원곳간’ 판매장은 어디에 있나요?

- 온라인 판매장 : www.강원곳간.com ☎ 033-256-9360, 0765
- 오프라인(숍인숍) 판매장이 현재 16개소 운영 중이며, 2017년말 까지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강원곳간 운영현황>

지역	판매장(연락처)
춘천	춘천생협 퇴계매장(☎253-6294), 강원도청 달빛카페(☎251-2727) 봄내가 자란다(☎070-8224-4565), COOP-BOX(☎256-0764),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244-8869)
원주	원주생협 단관매장(☎766-1891), 태장동 후페쉬마트(☎734-7065) 농가맛집 토요(☎769-2923)
강릉	한 살림 강원영동 솔올매장(☎645-3371)
동해	소이앤허브(☎535-1211)
속초	한 살림 강원영동 속초매장(☎632-3398)
홍천	서석면 로컬푸드센터(☎433-4012)
횡성	자연비카페(☎343-7132)
인제	용대2리 백담마을 판매장(☎462-0093), 정중앙 휴게소(☎460-2170)
고성	자연텃밭 판매장(☎681-9115)

10

사회적경제 「대표기업」을 확대 육성합니다.

[자체사업]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249-3228)

- 도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자립화를 지원하고,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 및 제품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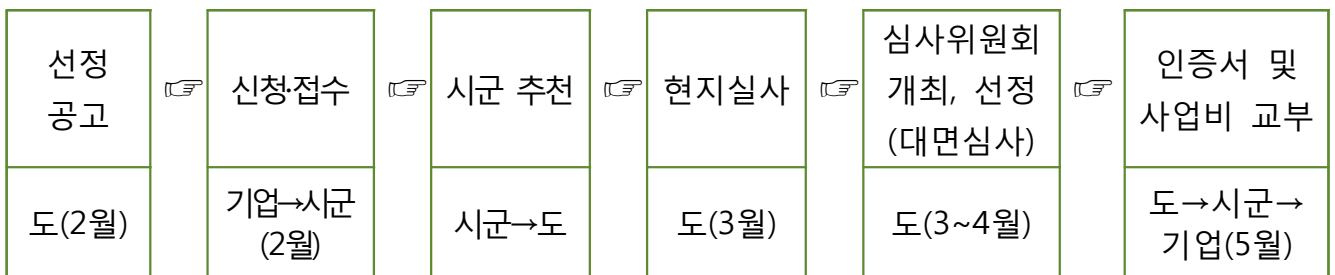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육성’이란?

- 선도기업 육성 : 도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분야의 성공모델로 육성
- 기술기반형 기업 :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 및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 지원내용은?

- 신청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 선정규모 : 선도기업(2개→6개), 기술기반형 기업(2개→3개)
- 지원기준 : 기업당 20백만원 지원 * 자부담 : 보조금의 10%이상
- 지원내용
 - 선도기업 : 시설 및 장비 보강, 사업활성화를 위한 자본재 구입 등
 - 기술기반형 기업 : 제품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기업+연구기관)
- 사 업 비 : 180백만원(도비 90, 시군비 90)

■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1

강원 바이오 스타기업을 육성합니다.

[자체사업]

전략산업과 생명산업팀 (☎249-3473)

- 도내 바이오 분야의 유망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수출활력 회복 등 지역경제를 견인 할 수 있는 스타기업으로 육성합니다.

■ 강원 바이오 ‘스타기업’ 이란?

- 기술경쟁력과 학습능력을 갖추어 코스닥 상장 또는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

■ 지원내용은?

- 신청대상 : 전년 매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도내 바이오기업
- 지원분야 : 4개 분야
 - (시제품제작) 사업화 아이템 발굴 및 조기상품화 지원
 - (효능평가/시험인증) 전임상 시험분석 및 수출제품 인증 지원
 - (경영컨설팅) 경영기법 및 기업 재무공시(IPO) 등 컨설팅 지원
 - (마케팅) 전시회 참가 지원 및 국내·외 판로 지원 등
- 지원규모 : 기업당 최고 50백만원 지원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400)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관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 선정절차 : 지원기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기업의 지원 적격성, 신청기업과 지원사업의 매칭도 등 종합고려)

12

도내기업의 신설·증설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체사업]

투자유치과 국내투자유치팀 (☎249-3537)

- 도내기업의 신설·증설 신규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신설·증설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대상 :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준 : 신규 10명 이상 추가고용하고 30억 원 이상 추가투자 시 총 투자금액(부지매입비+설비투자비)의 20% 범위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신규고용 및 투자규모에 따라 10억~60억 원
- 지원신청 : 투자 전 투자협약(MOU) 반드시 선행, 투자완료 후 신청
- 신청장소 : 투자 사업장 소재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 부서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조건 등 기준 완화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준 : 30명 이상 고용 또는 100억 원 이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준 : 10명 이상 고용하고 30억원 이상 투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수도권 이전기업과 도내 기존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함으로써, 도내 기존기업의 신규투자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언제 신청하나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13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체사업]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249-2757)

-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운수업, 수출기업 등
- 신청장소 : 기업 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

■ 중소기업 육성자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 경영안정자금 : 1,200억원(은행자금)
 - 운전자금(원자재, 인건비 등), 최고 8억원, 이차보전 2.5~3.5%, 최장 4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700억원(은행자금)
 - 시설자금(공장신축·부지매입 등), 최고 15억원, 이차보전 2%, 최장 9년
- 특수목적자금 : 3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최고 8억원, 고정금리 1.5%, 최장 5년
 - * 수출기업, 창업초기기업, 기술혁신기업, 재해·재난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등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 분	변경사항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1,000억원	▪ 1,200억원
	이차보전	▪ 3~4%	▪ 2.5~3.5%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기간	▪ 3년거치 5년 상환	▪ 4년 거치 5년 상환
특수목적자금	지원한도	▪ 기업당 5억원까지	▪ 기업당 8억원까지
	지원금리	▪ 2%	▪ 1.5%
	지원대상	▪ 수출기업, 창업초기기업, 기술혁신기업, 재해·재난기업	▪ 수출기업, 창업초기기업, 기술혁신기업, 재해·재난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지역산업육성기업, 산업단지 입주(예정)기업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에 자금과 이차보전 지원 가능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지원기간 연장으로 기업 부담이 완화되어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도움
- 특수목적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상이 확대되어 기업의 투자가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14

청년창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체사업]

일자리과 창업지원팀 (☎249-2785)

-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 희망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준비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청년창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대상 : 우수아이템을 보유한 만 18~39세 도내 (예비)청년창업자
- 사업비 : 14억원
- 사업규모 : 35명 내외
- 지원내용 : 창업자금 및 기술·경영·법률 자문
 - * 지원액 : 제조업 최대 4천만원, 지식서비스 최대 25백만원
- 사업신청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 6억 5천 4백만원▪ 사업규모 : 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 14억원▪ 사업규모 : 35명(21명 확대)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및 기술·경영·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에 도움

■ 언제 신청하나요? 2017년 3월

15

내수기업의 수출 첫걸음 사업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통상지원과 수출지원팀 (☎249-3046)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및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수출 유망제품 제조기업(30개소)
 -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10만\$ 이하(全無 포함)인 업체
-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 공고 → 서면평가 → 현장조사 → 최종선정
-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강원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 <http://trade.gwd.go.kr>)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등

■ 수출 첫걸음 사업은 어떤 것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FTA 수출 종합 컨설팅 외 1개 지원사업 선택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FTA 수출 컨설팅	▷ FTA활용 수출 종합 컨설팅 및 무역실무 워크샵, 수출상담회 참가	기본
수출용 홍보디자인 개발	▷ 기업별 해외마케팅 특성에 적합한 수출용 홍보디자인 개발	선택
해외 바이어 초청 항공료	▷ 계약체결 및 공장방문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항공료 지원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참가기업에 부스임차료 등 지원	
수출물류비용 지원	▷ 수출물품 및 샘플 등 발송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마케팅 및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 위주 기업의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를 통해 해외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언제 신청하나요? 2017년 3월

16

강원무역이 도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통상지원과 글로벌통상팀 (☎249-2092)

- 강원무역은 강원도 기업의 수출 역량 배양을 위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수출 전략상품 개발 지원, 바이어 발굴 등 수출 희망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강원무역이란?

- 강원수출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강원도가 민간 전문기업과 협조해 설립한 수출 전문 컨설팅 조직

■ 강원무역에서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오프라인 수출(무역)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에게 과정별 컨설팅 제공
-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수출시장의 오프라인 매장 발굴 및 도내 제품 입점 지원
- 글로벌 온라인 마켓(이베이, 아마존, 타오바오, 라자다 등)에 도내 제품 리스팅 및 프로모션 추진

* 2016년 : 10개업체 24개품목, 60백만원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

■ 강원무역을 만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수출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수출 자신감 고양
- 수출판로가 막막했던 기업은 새로운 온·오프라인 수출 플랫폼을 만나 기업에 활력을 얻음

■ 어디에 신청하나요?

- 강원무역 박종봉 팀장 070-4468-1836 / 이대성 차장 070-4468-1838

17 대형 유통업체 상품기획자(MD)와 상담기회를 드립니다.

[자체사업]

경제진흥과 판로지원팀 (☎249-2754)

-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상품성 있는 제품을 원하는 대형유통업체 MD간 양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해 도내기업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 대형 유통업체 MD초청 구매상담회는 어떤 사업인가요?

- 사업명 : 「2017 대형유통업체 MD초청 구매상담회」
- 주최·주관 : 강원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사업목적 : 대형 유통업체 MD와 업체간 상담기회 제공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판로 확대
- 사업내용 : 대형유통업체 구매·입점 상담, 제품별 종합 판로컨설팅
- 사업규모 : 구매상담회 2회(회당 MD 10명, 도내 기업 30~50개)

■ 어떻게 참여하나요?

- 신청기간 : 2017. 3월, 9월 사업 공고시(예정)
- 참가대상 : 도내 중소제조업(특산품, 음식료품, 공산품 등)
- 참가신청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 공고시 서식 제공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도내 업체와 유통업체 MD간 1:1 구매 밀착상담, 우수제품 전시 등을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 입점기회 제공
- 유통전문가의 제품별 판로 종합 컨설팅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기업 경쟁력 향상 대책 수립에 도움

Ⅱ

나눔과 배려에 기초한 교육복지

1. 특성화 고등학교의 도제교육을 지원합니다. / 27
2.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합니다. / 28
3. 읍면동 복지허브화 ‘행정복지센터’가 찾아갑니다. / 29
4.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를 지원합니다. / 30
5.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31
6.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합니다. / 32
7. 효(孝) 119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 33
8. 출산가정에 산후 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 / 34
9.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합니다. / 35
10.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전계층 지원합니다. / 36
11.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지원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 37
1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 38
13.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39
14. 어린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 40
15. 저소득층의 암 조기검진을 지원합니다. / 41

1

특성화 고등학교의 도제교육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일자리과 청년일자리팀 (☎249-3453)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선정된 특성화 고등학교의 도제교육 확대 및 취업을 제고를 위해 도비를 특별지원합니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란?

-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업 교육훈련 제도
 - 1학년 말 대상선정, 2~3학년 동안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일학습 병행교육
 - 선발과 동시에 졸업 후 채용약정, 훈련기간 동안 4대보험 및 최저임금 보장
- 도내 사업단
 - (전자분야) 원주공고(거점) + 강릉중앙고 + 영월공고 * '15년 선정
 - (기계분야) 춘천기공(거점) + 원주공고 + 태백기공 + 영월공고 * '16년 선정

〈 도제학교 정부지원 현황 〉

- 학교지원 : 사업단별 교육부 특별교부금 + 고용보험기금(최대 20억원)
 - 훈련시설 및 장비비, 학생·교원 연수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인건비 등
- 기업지원 : 훈련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 훈련지원금, 전담인력 수당 등

■ 어떻게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도내 도제학교 선정 사업단(특성화고)
- 지원예산 : 총 600백만원
- 지원절차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선정된 학교대상 공모
- 지원내용 : 학교별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훈련기자재, 실습재료비, 실습공간 환경개선비 등 지원
 - 참여기업 매칭 및 일학습병행제 홍보 지원 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2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복지팀(☎249-2510)

- 교육기회가 부족한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 대상(아동, 노인, 학부모,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 수요자 요구 및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방식 도입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6년)	확 대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역(성폭력예방교육 120회) ※ 가정폭력예방교육 2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도서벽지(성폭력예방교육 25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역 : 180회 - 도서벽지, 여성범죄 취약지역 : 70회 ※ 가정폭력예방교육 20회

■ 어떻게 운영되나요?

- (강원도) 안전취약지역, 도서벽지, 여성범죄 취약지역등 등 교육이 필요한 지역 및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선정
- (지역지원기관) 도민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 (시·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 및 안내, 신청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참가자들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강화에 동참하는 역할 수행 및 분위기 확산 기여
- 성 평등 관점에서의 맞춤형 예방교육으로 도민의 안전체감도 향상

■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2017년 1월

3

읍면동 복지허브화 ‘행정복지센터’가 찾아갑니다.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249-2406)

-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가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018년까지 전 읍면동 완료)

■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사각지대 발굴 등 통합사례관리, 방문상담, 민간 복지자원 연계 업무를 추진합니다.
 - * 맞춤형 복지팀 신규설치 : 복지6급 팀장 + 팀원 2
- ‘16~’18년까지 읍면동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187개소)
 - ‘16년 맞춤형 복지팀 구성 : 62개 읍면동
 - * 연도별 : ‘16년 62개소, ‘17년 57개소, ‘18년 68개소
 - * 복지인력확충 220명 : 신규 177(복지직 133, 행정직 44), 재배치 43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6년 3월)	변 경 (2016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복지센터(명칭 변경)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상담, 민간 복지자원 발굴

■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요? 2016년 4월

4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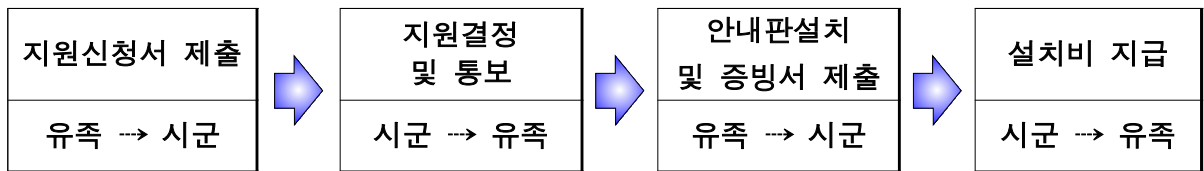
[자체사업]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49-2231)

-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도내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를 지원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묘지'로 도내 등록된 묘지
- 지원기준 : 묘지안내판 설치비 기당 600천원 범위
 - * 묘지안내판 지원은 대상묘지 93기를 4개년 계획으로 연차별 추진
- 지원내용 : 도로변, 묘지입구 등 유족이 장소를 선정하여 안내판 제작·설치하는 것을 지원
- 지원절차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여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
-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고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의 방치·훼손 예방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5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응급의료팀 (☎249-2923)

- 일반인의 이동이 많은 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과 환자 생명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란?

- 심장 기능이 정지한 경우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어 심장박동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의료장비
 - *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로 명칭 변경(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2016.5.29.)

■ 언제 사용하나요?

- 일반적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 * 119에 먼저 신고하여 처치 안내 및 신속한 이송조치
 - 자동심장충격기의 음성안내 및 사용설명서에 따라 기기 사용

■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철도차량,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관공서 청사, 체육시설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 학교, 리조트 등 관광시설, 기타 사무실 등 다중이용시설

■ 필요할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강원도 및 시·군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2017년 1월)
 -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설치현황 확인 가능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 '응급의료정보' 앱 제공 중

6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249-2416)

-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와 학대 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과 효율적인 대처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은?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장애인 학대 조사, 장애인 쉼터 운영, 의료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보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2017년 10월 예정

7

효(孝) 119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자체사업]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 (☎249-2512)

-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강원도가 노인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효(孝) 119센터를 운영합니다.

■ 효(孝)119센터란?

- 노인학대 예방활동을 통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피해 노인에 대한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보호 및 다양한 연계 서비스 지원 센터

■ 효(孝)119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노인인권 보호활동 전개(인권실태조사)
- 콜센터 1577-1389 연계 운영(24시간)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의 인권침해 현장 고발, 24시간 응급상황 대기 및 체계 구축
 - 경찰, 시설, 병원과 연계하여 피해노인을 위한 보호 및 심리적·신체적 치료 지원
- '찾아가는 노인인권 전문상담'과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추진 등 노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효 119센터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 사례 감소효과 예상
- 24시간 콜센터 운영 및 지역기관과의 응급체계 구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신속히 구조, 노인학대로 인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 언제부터 어디에 설치·운영되나요?

- 2017년 1월부터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내 설치·운영 예정

8

출산가정에 산후 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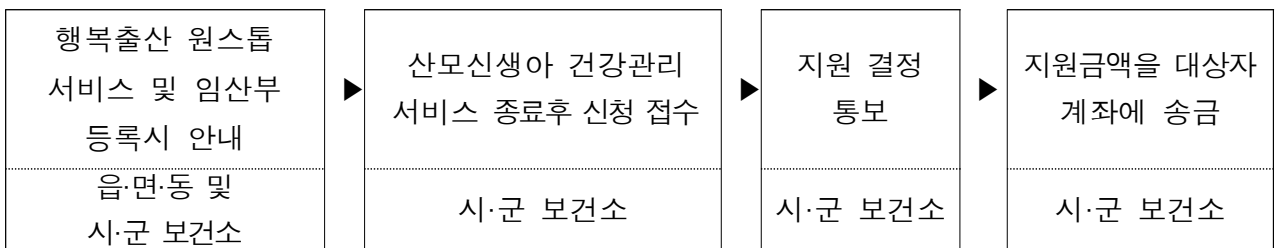
복지정책과 출산정책팀 (☎249-250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 대한 부가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지원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기간(10일)
지원 내용	▪ 표준서비스 : 산모·신생아 돌봄 건강관리사 파견시 본인부담금 ▪ 부가서비스 : 큰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시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표준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의 90%지원, 1인최대 20만원 ▪ 부가서비스 이용 : 1인 1일 최대 13천원 지원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출산 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산후돌봄에 따른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2017년 1월
-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2017년 3월

9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출산정책팀 (☎249-2504)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해드립니다.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시설보호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 등
지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일부터 영아 월령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동안 지원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귀 구매비용 월정액(64천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정액(86천원)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6년)	확 대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제분유(지원대상 추가) : 시설보호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동안 지원(최대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동안 지원(최대 2년)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10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전계층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복지정책과 보육아동팀 (☎249-2240)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을 전 계층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지원내역이 무엇인가요?

- 정부 표준 보육료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 차액(부모부담금) 전액 지원
 - 민간어린이집 : 만3세 55천원, 만4세~만5세 37천원
 - 가정어린이집 : 만3세 67천원, 만4세~만5세 57천원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6년)	확 대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저소득, 장애아, 다문화가정, 셋째아 이상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u>아동 전체</u>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육료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카드발급 신청, 발급대상자 : 보호자(부모, 후견인)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11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지원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249-2274)

◦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보호와 발달장애인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지원서비스는 어떤 사업인가요?

- 발달장애인 원스톱 복지지원체계 인프라 구축
 - *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 2016. 9. 27 / 춘천시 영서로 2341 미메디칼타워 6층
-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 3개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3개사업
 -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성년후견인지원, 가족휴식지원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신청기관 : 해당 읍·면·동사무소

사업명	신청방법
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유기 등 발달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발달 장애인의 결정지원을 위한 공공후견
발달재활서비스	- 대상 : 만18세미만 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지원액 : 14~22만원/월
언어발달지원	- 대상 :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등록장애인),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지원액 : 16~22만원/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대상 : 만18세미만 1~3급 중증장애양육기정,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지원시간 : 연480시간, 월80시간 이내(1년 기한 내 자유롭게 이용)
부모심리상담서비스	-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자녀의 부모,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지원액 : 16만원/월
성년후견인지원	- 대상 : 성년후견인 선임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지원액 : 심판청구비(1회 30만원), 활동비(10만원/1인·월)
가족휴식지원	-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부모 및 비장애 형제·자매,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지원액 : 참여횟수별 1인당 6~23만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욕구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1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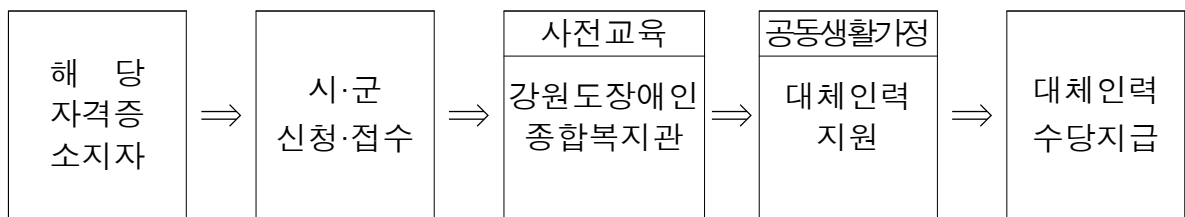
[자체사업]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249-2681)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의욕 향상에 기여합니다.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7개소
- 지원기간 : 개소당 월 2일(최대 18일)
- 자격조건 : 장애인 활동보조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지원내용
 - 대체인력교사 사전교육 실시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시설 종사자 부재사유 발생시(연가, 병가, 경조사 등) 대체인력 지원
 - 근무시간 : 8시간(17:00 ~ 익일09:00) * 취침시간 22:00 ~ 06:00 제외
 - 지원금액 : 6만원/1일
- 추진절차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근로조건이 열악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로의욕 향상
- 대체인력교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일자리 창출 도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4월 예정

13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과 다문화가족팀 (☎249-2698)

-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연령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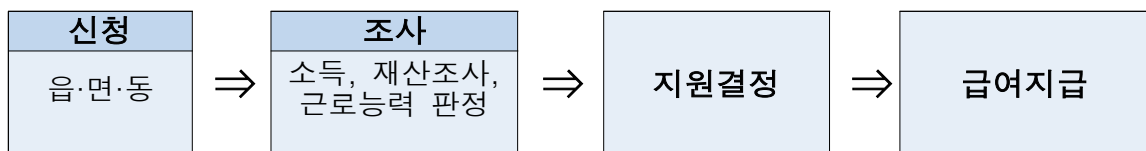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6년)	확 대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연령 : 만12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월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연령 : 만13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월 12만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업무처리 절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14

어린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보건정책과 방역관리팀 (☎249-2671)

- '16.10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을 만 5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6년)	확 대 (2017년)
▪ 지원대상 : 생후 6~36개월 미만	▪ 지원대상 : <u>생후 6~59개월 미만</u>
▪ 지원기관 : 보건의료원 및 위탁의료기관	▪ 지원기관 : <u>보건소보건의료원 및 위탁의료기관</u>
▪ 지원백신 : 0.25ml 근육주사	▪ 지원백신 : 36개월까지 0.25ml, 이후 0.5ml

■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접종시기: 매년 10~12월
- 접종횟수: 과거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
 -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첫 해 1회만 접종받은 경우: 다음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첫 해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다음해부터 1회 접종

■ 어떤효과가 있나요?

-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감염 및 유행으로 인한 질병 부담 감소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0월

15

저소득층의 암 조기검진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팀 (☎249-2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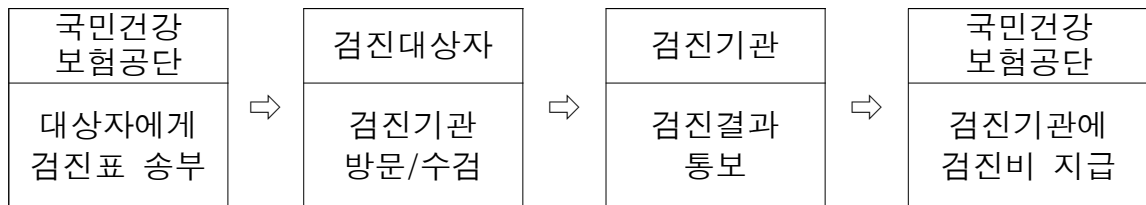
- 의료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조기발견 시 완치 가능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 암검진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월 보험료 직장 87천원 이하/ 지역 86천원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층 5대암 검진비 지원

암종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나이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만20세 이상	만40세 이상	만50세 이상
검진주기	2년	2년	2년	6개월	1년

■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검 예정자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 사전 송부
- 수검 예정자는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데 기여



함께 잘사는 농어촌 육성

1.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합니다. / 45
2. 6차산업 인증사업체 유통·마케팅 채널이 다양해집니다. / 46
3. 곤충 사육농가를 지원합니다. / 47
4. 발직불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 지원합니다. / 48
5. 청년농업인 성공창업을 돕습니다. / 49
6.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에 가솔린 기관이 포함됩니다. / 50
7. 폐통발 어구 수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51
8. 불가사리 수매사업 단가가 상향됩니다. / 52
9. 임산물 재배를 위한 행정처리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53

1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과 농촌산업팀 (☎249-2767)

- 지역의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촉진 지원합니다.

■ 달라지는 점은 ?

- 기존) 지역컨소시엄 구성 → 변경)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생산주체의 집적화, 업종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키고자 지원사업명 변경, 지역단위 대표 경영제 전략 육성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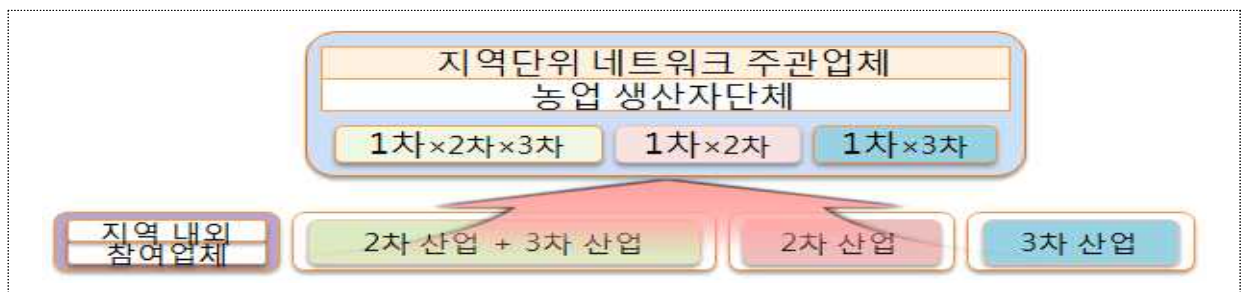
■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 6개시군 8개품목 우선대상('17년)

- 평창(약콩), 양구(시래기), 강릉(산채), 홍천(잣, 인삼, 한우), 영월(장류), 양양(떡)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 생산자단체는 지역 특화품목의 참여 농가수(50농가 이상 참여) 또는 생산물량(시군 내 생산량의 20% 이상) 등을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어야 함
- 사업단은 사업을 주관하는 농업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농촌체험관광을 전담하는 주체 등을 연계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규모 및 비율 : 총 300백만원 / 2년차(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수행방식 : 네트워크 구축 → 사업계획 신청 → 선정평가 → 공동사업 시행

■ 신청은 언제하나요 ? 2017년 1월 중 (시군 → 도 → 중앙)

2

6차산업 인증사업체 유통·마케팅 채널이 다양해집니다.

[자체사업]

농정과 농촌산업팀 (☎249-2767)

- 인증사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 지원확대 및 경쟁력 제고로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해 드립니다.

■ 달라지는 점은 ?

- 사업명 : '16년(인증사업체 기능보강) → '17년(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
- 지원분야 : H/W중심 → 유통·마케팅(S/W) 중점 지원
- 지원규모 : '16년 2개소(개소당 50백만원) → '17년 5개소(개소당 20백만원) 조정

■ 2016년 주요성과

- 6차산업 인증사업체 2개소 선정 지원
 - ① 전국 이달의 6차산업인으로 선정 (농식품부 / 8월)
: 중앙 언론매체 노출, 전국 홍보확산, 제품입점 연결 등
 - ② 제1회 강원도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금상 수상
: 우수사례 인증현판 및 시상금 수여, 지방 언론매체 홍보 등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량 : 5개소 * 개소당 20백만원
- 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지원대상 : 6차산업 인증경영체(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 등)
- 주요사업 : 포장디자인 개선, 홈쇼핑, SNS홍보, 제품개발 등

■ 신청은 언제하나요 ? 2017년 1월 (시군 → 도)

3

곤충 사육농가를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유통원예과 원예팀 (☎249-2623)

-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곤충사육을 미래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곤충 사육농가를 지원합니다.

■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대상 : 곤충을 사육하거나 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 사업내용 : 곤충 사육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사육 기자재 지원
- 신청기간 : '16. 1월 말까지 신청(2월 확정)
- 신청절차 : 주소지 시·군 농정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방문신청

■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사업량 : 4개소
- 사업비 : 120백만원(30백만원/개소)
- 재원별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애완·천적·식용 등 곤충 사육 농가(곤충산업 신고자 우선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1월),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2~10월)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영세한 사육시설 개선을 통해 곤충산업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및 미래농업으로 육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4

밭직불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농산경영팀 (☎249-3567)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매년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밭직불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밭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논이모작 : 2017. 2. 1 ~ 3. 15까지
 - 밭 고 정 : 2017. 2. 1 ~ 4. 29까지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금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밭 고 정 : ha당 40만원 지급 - 논이모작 : ha당 50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금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밭고정(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안 : ha당 58만원 지급 * 농업진흥지역밖 : ha당 43만원 지급 - 논이모작 : ha당 50만원 지급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지금까지 밭 고정직불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나 '17년부터 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차등 지원하여 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우대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5

청년농업인 성공창업을 돕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

(☎248-6116)

- 청년농업인을 확보, 고령농촌 사회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청년들에게 역량 향상 교육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2013년부터 청년4-H회원들에게 창업사업 영농기초기반(도비)과 청년 경쟁력제고(국고)사업을 지원하고, 단계별로 역량향상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음
 - ※ 연도별 계획 : ('16까지) 81명 → ('17) 94명 → ('20) 150명

■ 도입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4-H회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가입신청서를 제출·등록하고, 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지덕노체 이념을 숙지하여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우수회원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회원 컨설팅 멘토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컨설팅분야를 제출하면 분야별로 그룹화하여, 도·시군 연구·지도사, 산학연협력단, 민간전문가 등을 멘토로 지정 운영(그룹별 연구모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창업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계획 공모를 통해 우수회원 기초·창업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영농지원(1인당 20백만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50백만원) ※ '17년 사업대상자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기 선정 '18년도 사업은 금년도 4~5월에 신청(선정 8~9월)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6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에 가솔린 기관이 포함됩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진흥과 어업지원팀 (☎660-8354)

- 총톤수 2톤미만 소형어선에 대하여도 가솔린 기관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영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고효율어선유류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저효율 기관, 장비, 설비 등을 대체하는 사업
 - 대상장비 : 어선기관, 장비, 설비, LED등, 전기추진장치, 가솔린 기관
 - ※ 근 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 어떻게 바뀌나요?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 가솔린 기관(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솔린 기관(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2톤미만 소형어선 - 규모 : 100마력 이하 ※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은 제외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유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출어포기 등 어업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범위 확대로 다수의 어업인이 혜택을 받아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활동을 도모
- 한·중 FTA 등에 대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어선 어업인에 대하여 선외기 지원 확대를 통해 어선사고 저감 및 어업경쟁력을 제고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1일

7

폐통발 어구 수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강원도]

어업진흥과 기술인력육성팀 (☎660-8328)

- 대문어 조업구역내 조업중 발생한 폐통발 어구를 수거함으로써 해양오염 예방 및 서식·산란장 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대문어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 자율적으로 매년 3.1.~3.31.(1개월)을 조업금지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조업구역내에서 발생한 폐통발 어구를 수거하기 위한 사업
- 2017년도에는 도내 폐통발 어구 수거를 위해 총 1억원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대문어 서식 어장내 해양오염원인 폐통발 어구를 수거함으로써 연안 해양환경 개선
- 연안 어장내 대문어 서식·산란장 환경개선으로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1일

8

불가사리 수매사업 단가가 상향됩니다.

[강원도]

수산정책과 수산개발팀 (☎660-8335)

- 연안어장 보호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수매 단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어업인이 포획한 불가사리를 수매함으로써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에 서식하는 정착성 어족자원을 보호하여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1998 ~ 2015년까지 5,852톤(3,847백만원) 수매

■ 어떻게 개선되나요?

- 조업 중 인양(어선어업) 단가는 kg당 1,100원 → 1,200원
- 수중 내 직접인양(나잠, 관리선) 단가는 kg당 1,300원 → 1,400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연안해역 불가사리(해적생물) 수매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어업인의 사업 참여의지를 높이고, 적극적인 구제사업 실시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 가능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1일

9

임산물 재배를 위한 행정처리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산림청]

산림관리과 산지관리팀 (☎249-3136)

-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이유

-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임산물의 재배 곤란
- 경미한 형질변경을 통한 대규모 임산물 재배도 제한되어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에도 어려움 발생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성토·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 하도록 산지관리법 개정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임산물 재배 행정처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임업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2017년 6월 3일

IV

Green·Safe 강원도 만들기

1.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 정책이 확대됩니다. / 57
2.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58
3. 숲해설가 운영방식이 전문업체 위탁으로 바뀝니다. / 59
4.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이 가능해집니다. / 60
5.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지원금 받아주세요. / 61
6. 사업장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 62
7. 물환경보전을 위한 수질오염물질을 추가 지정합니다. / 63
8. 빈용기 보증금액이 인상됩니다. / 64
9.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선진화됩니다. / 65
10.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기준이 완화됩니다. / 66
11.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67
12. 조류 예방조치를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합니다. / 68
13. 국내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69
14.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합니다. / 70
15.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이 완화됩니다. / 71
16.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72

1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 정책이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249-2755)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 정책이 확대 추진됩니다.

■ “신재생에너지”란 무엇인가요?

-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일컬어 신재생에너지라고 명명

*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

■ 어떻게 달라지나요?

구분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장기 고정가격 (SMP+REC) 계약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제한 없음 ▪ (방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약 ▪ (계약기간)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 전력판매대금(SMP)+신재생인증서(REC) 합산가격 계약 ▪ 20년 내외
주택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국비 지원 25% ▪ (미니태양광) 지방비 지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지원 최대 50%(2배 상향) ▪ 지방비 50%+국비 25% 지원
주민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설비) 해당 없음 ▪ (주민참여 요건) 해당 없음 ▪ (가중치 부여)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1MW, 풍력 3MW 이상 ▪ 발전소 주변 읍면동 주민(조합 또는 5인 이상) 지분 10% 이상 참여 ▪ 가중치(REC) 최대 20% 부여
신재생 설비 전력망 접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MW 이하 무제한 접속 ▪ (계통접속 소요기간) 17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MW 이하 및 1MW 이상 접속 대기 중인 사업자도 '18년까지 접속 ▪ 11개월(6개월 단축)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분기

2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강원도] 에너지과 기후변화대책팀 (☎249-2939)

- 주차단위 구획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충전시설 1기 이상, 주차단위 구획 500개 이상인 경우 충전시설 2기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왜 설치해야 하나요?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6년 6월에 개정
 -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설치대상 주차장과 규모, 설치수량은 시도 조례에 위임
-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가 '16년 12월에 개정
 - 상위법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과 수량을 정함
 -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부터 설치하도록 규정

■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대상 및 설치수량은?

- 주차면이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충전기 1기 이상 설치
- 주차면이 5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충전기 2기 이상 설치

■ 설치해야 할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종류는?

-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로 설치
 - 급속충전시설 : 직류 100볼트 이상 450볼트 이하 또는 교류 380볼트를 가변적으로 공급하여 충전
 - 완속충전시설 : 교류 220볼트를 공급하여 충전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3월 이후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신청 등을 하는 시설 (주차면 200개 이상)에 적용합니다

3

숲해설가 채용이 전문업체 위탁용역으로 바뀝니다.

[산림청]

산림소득과 산림휴양팀 (☎249-3121)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전문성 제고 및 장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숲체험 등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 문화를 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직접 채용방식 -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계약 체결 - 숲해설 수요 등 각 시군 여건에 맞는 과업내용을 공고하고 과업지시서 등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

■ 전문업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등록기준 : 숲해설가 3인 이상 소속, 자본금 1천만원 이상, 사무실 보유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신청
 - 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등록증 발급
- 우리 도 : 3개업체 등록
 - 춘천 생명의 숲, 원주 산약초영농조합법인, 양양 한국숲해설가협회 영동지회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4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산림청]

산림관리과 산지관리팀 (☎249-3134)

-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이유

- 장기간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중복하여 부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 2016. 1. 21.부터는 「농지법」 농지의 정의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됨에 따라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발생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2016. 1. 21. 기준으로 3년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년간 농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임시특례 운영
- ※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제7조) 내 농지는 해당되지 않음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부담금의 이중 부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6월 3일

5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지원금 받아주세요.

[환경부]

환경과 환경관리팀 (☎249-4141)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아시나요 ?

- 지원조건에 충족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무상 지원합니다.
- 보조금과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시 고철비 중복 수령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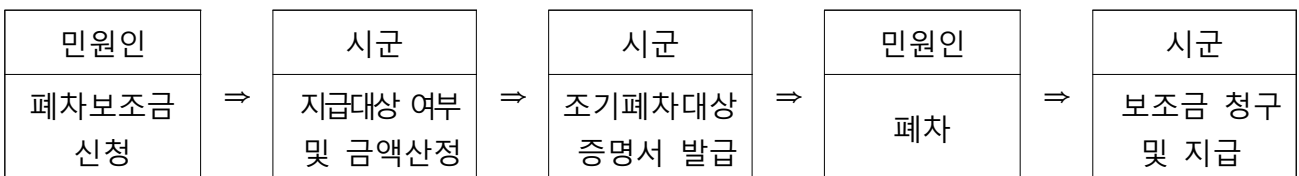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

- 사 업 비 : 804백만원 (국비 50%, 도비 15%, 시군 35%)
- 사 업 량 : 500대 (1,608천원 * 500대 = 804백만원)
- 지원조건 : ① 정상 차량 ② 6개월 이상 보유 차량
③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 사업내용 :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05년 이전) 조기폐차비 지원

■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 노후경유차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이상 낮아 연간 100만원 이상 연료비가 추가로 낭비되는데 조기폐차를 통해 깨끗한 대기질을 만들고 보조금도 수령 가능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6

사업장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환경부]

환경과 환경관리팀 (☎249-2580)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 인허가 체계로 1개 시설에 대하여 최대 10종 인허가를 각각 진행하던 것을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여 관리됩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 * 1개 사업장에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 인허가 체계로 최대 10종 인허가를 허가기관별로 진행하던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허가·관리하는 제도

■ 주요내용은 ?

- (절차 통합) 복잡하게 얽혀있는 6개 법률의 시설별 10개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의 허가로 통합·간소화
- (환경관리 최적화) 다양한 사업장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조건과 배출기준 부여, 효과적 환경보호 체계로 전환
- (기술 기반) 오염배출은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도 높이는 환경관리기법을 조사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제공
- (원스톱 서비스) 허가의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합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
- (합리적 사후관리)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보완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자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 환경영향이 큰 대형사업장에 우선 적용이 되고, '17년부터 '21년까지 해당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시행되며,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함

7

물환경보전을 위한 수질오염물질을 추가 지정합니다.

[환경부]

환경과 환경관리팀 (☎249-2243)

- 국민건강과 물환경 보전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페놀'과 '펜타클로로페놀'을 수질오염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 추가 지정되는 수질오염물질은 ?

- 국민건강과 물환경 보전을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유해 화학 물질인 '페놀'과 '펜타클로로페놀'을 수질오염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

* 53종에서 '17년부터 55종으로 관리 확대

■ 기대되는 효과는 ?

- 산업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하천으로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제한되므로,
 - 산업폐수를 통한 유해물질의 공공수역 배출이 최소화되어 수질과 수생태계가 건강하게 관리될 것으로 예상

■ 법에서 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

< 수질오염물질 >

- 현황 :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 수은, 총대장균군, 페놀 등 55종('17)
- 관리 : 폐수배출시설(82개 업종)에서 산업폐수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제한

○ 페놀 및 펜타클로로페놀의 배출허용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페놀(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mg/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8

빈용기 보증금액이 인상됩니다.

[환경부]

환경과 자원순환팀 (☎249-2574)

- 소비자의 현재 물가상황을 반영하여 보증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빈병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지난 22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빈용기 보증금이 물가수준과 유리병 제조 원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
 - 소주병 : 40원 ⇨ 100원, 맥주병 : 50원 ⇨ 130원

구 분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가 격	190ml 미만	▪ 20원/개	▪ 7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 40원/개	▪ 10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 50원/개	▪ 130원/개
	1,000ml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350원/개
라벨 (예시 : 소주병)			

소주병, 맥주병 등 제품 걸면 라벨을 확인해주세요

- 보증금 인상 전과 후의 빈병은 라벨로 명확하게 구분
 - 2017년 이전에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며,
 - 만약 라벨이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함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9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선진화됩니다.

[환경부]

환경과 자원순환팀 (☎249-2574)

- 도심 미관을 해치고 각종 사고를 유발했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을 개선하여 폐기물 낙하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가 무엇인가요 ?

-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운반하고, 작업의 편리성, 폐기물 유출 및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차량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폐기물의 종류별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도록 수집·운반 기준이 강화

구 분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생활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없음 - 최소한의 밀폐식 운반차량을 보유하도록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형 차량 ▪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 폐가전·가구, 폐지·고철·폐포장재 등
음식물류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이나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로리형 밀폐차량 ▪ 밀폐용기 사용시 덮개 설치
사업장 일반폐기물	액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로리형 밀폐차량 ▪ 밀폐용기 사용시 덮개 설치
	고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롤, 덤프, 컨테이너 트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형 차량 ▪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 폐가전·가구, 폐지·고철 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10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기준이 완화됩니다.

[환경부]

환경과 공원관리팀 (☎249-2370)

- 자연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 기준을 완화하여 탐방객 및 지역주민 편의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란 ?

-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①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②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 ③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 ④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 어떤 행위가 가능해진 걸까요 ?

- 지금까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을 허용하는 규정 미존재
- 2017년부터는 해당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설건축물 설치 및 물건의 적치 허용
- 또한, 해안·섬지역에서 편의시설(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의 설치가 한시적으로 허용

■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재의 적치와 가설건축물 설치를 사업현장 인근에 설치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 제고와 사업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탐방객의 편의 제고 가능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5월 30일

11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

수질보전과 수질보전팀 (☎249-2584)

- 명확한 규정 없이 관리되어 온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17.1월부터 대상시설 신고가 의무화되고, 수질 및 관리기준이 적용됩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은 무엇인가요 ?

- “물놀이형 수경시설” 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로서
-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시설” 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임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화
-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질검사(1회/15일) 의무화
 - pH(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 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 아래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수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및 저류조 청소, 용수의 여과 및 소독,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카드 작성·보관 등
- 수질 및 관리기준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28일 *기존시설의 경우 6개월 유예

12 조류 예방조치를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합니다.

[환경부]

수질보전과 수질보전팀 (☎249-2586)

- 조류(녹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호소(호수 등 물이 가두어진 곳)에만 실시한 조치를 하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의 조류(녹조) 피해예방 조치는 무엇인가요 ?

- 환경부 장관은 조류의 발생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소의 수면관리자나 취·정수시설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환경부 장관이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댐이나 보의 비상방류, 조류제거, 취·정수시설 정수처리 강화 등이 있음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지금까지는 호소의 수면관리자만을 대상으로만 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천과 호소를 포함한 모든 공공수역의 관리자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조류예방조치 대상] ▪ 호소	[조류예방조치 대상] ▪ 호소, 하천 등 공공수역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호소 및 하천을 이용하는 상수원에 대한 조류 피해 예방
- 조류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 가능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28일

13

국내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환경부]

수질보전과 수질보전팀 (☎249-3554)

-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비점오염원은 무엇인가요 ?

-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명함
 - 비점오염원 종류 : 토사, 유기물질, 기름, 협잡물, 영양물질, 살충제 등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관계 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종합대책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대책을 작성·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별 대책의 이행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관계 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비점오염 관리를 종합하여 연계·조정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 관계기관 소관별(도시·농촌·산림 등), 지역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여 하천에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14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합니다.

[환경부]

수질보전과 상수관리팀 (☎249-2575)

-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하여 수돗물의 수질 및 위생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지금까지 브롬산염은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 먹는 물 중의 함유 실태를 검사해 왔으나, 2017년부터 수돗물 수질기준에 추가
 -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평가한 인체 위해도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하는 허용 위해수의 약 1/10로 나타나, 선제적으로 위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브롬산염을 수질기준에 추가

* 허용위해수준 : 몸무게 60kg인 성인이 70년동안 매일 2ℓ의 물의 마실 때
10만명당 1명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

■ 어떻게 달라지나요 ?

기준항목	수질기준	적용대상		검사주기	시행시기
브롬산염	0.01mg/L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5만 톤/일 이상 * 현행 수질감시항목 운영 대상	1회/월	'17.1.1일부터
			5만 톤/일 미만		'18.1.1일부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1회/년	'18.1.1일부터

- 수도사업자는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새롭게 설정됨에 따라 5만톤(일) 이상 정수장에 대하여 월 1회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야 하고, 2018년부터는 모든 수도시설에 대해 검사를 확대하여야 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15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이 완화됩니다.

[환경부]

수질보전과 토양지하수팀 (☎249-3344)

- 오염토양 정화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반출정화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2017년 1월부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을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
- 또한, 부지면적을 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 부지 면적으로 적용토록 개념을 명확화

■ 어떻게 달라지나요 ?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p>[반출정화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p>[반출정화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 부지면적은 단일부지면적으로 적용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반출정화대상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부지 내 정화처리보다 신속한 정화처리 가능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16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환경부]

수질보전과 환경시설팀 (☎ 249-2588)

-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무엇인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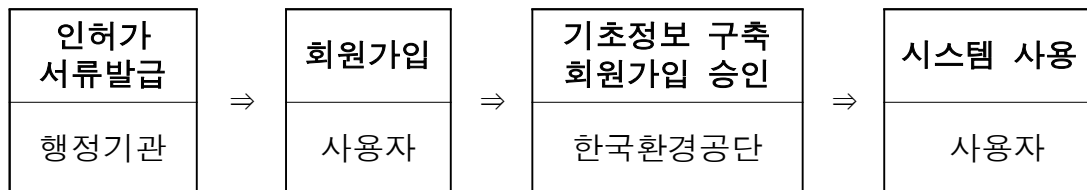
- 가축분뇨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누가 사용하나요 ?

- 대상 :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
*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체비료를 말함

■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나요 ?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lsns.or.kr)
- 사용절차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가축분뇨 불법 투기를 방지하여 환경오염 발생 예방
- 정보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도점검 한계를 극복하고, 적정 처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1일 배출시설 설치신고지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V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주민 지원

1. 지식재산 소송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 75
2. 우수상품 강원도 브랜드관 입점을 지원합니다. / 76
3. 강원여행 파트너! 「투어강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77
4. 동계올림픽 대비 전도민 '스마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78
5. 효도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 79
6.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장애인 콜센터) 연장 운영 / 80
7.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81
8.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조건이 변경됩니다. / 82

1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특허청 · 강원도]

전략산업과 과학산업팀 (☎249-3352)

-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발생 시 소용되는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송보험의 가입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식재산 소송보험이란?

- 가입대상 : 도내 기업
- 지원내용
 - 농식품분야 상표·디자인권 보호 단체보험, 중국 등 아시아 전용,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 등 기존상품 활용 및 강원지역 수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단체보험 설계 가능
 - 기업부담금 : 보험료의 10 ~ 40%
- 운영기관 : 강원지식재산센터(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內)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우산동)
강원지식재산센터(☎ 033-749-3326)
- 접수방법 : 심사서류 방문 · 우편 접수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심사 통해 대상자 선정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에 신속 대응하여 기업피해 최소화
- 기업의 국외진출 시 지식재산권 보호, 적극적인 사업추진 가능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2

우수상품 강원도 브랜드관 입점을 지원합니다.

[자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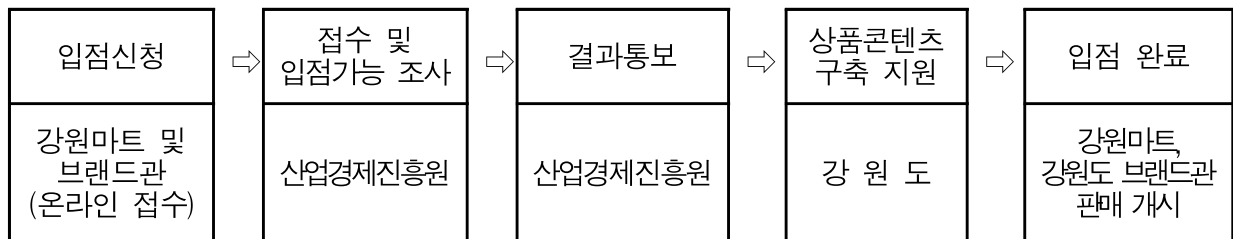
정보산업과 전자상거래팀 (☎249-2498)

- 강원도 브랜드관은 네이버 쇼핑몰(스토어팜)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내 우수 농수특산품 및 생산품을 판매하는 강원도 공동브랜드 쇼핑몰로서 네이버 스토어팜 입점과 상품콘텐츠 구축을 지원합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 사업기간 : 2017년~
- 사업목적
 - 국내 유명 쇼핑몰(네이버 스토어팜)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효과 극대화
 - 도내 생산품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도내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품 상품콘텐츠 구축 지원
 - 강원마트 및 네이버 스토어팜(쇼핑몰) 입점 및 상품등록 지원 등
- 시행기관 : 강원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강원도 우수상품 강원도 브랜드관 운영 : 2017년 1월
- 강원도 브랜드관 판매 우수 농수특산품 확대추진 : 2017년 1월

3

강원여행 파트너! 「투어강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원도]

관광마케팅과 관광올림픽팀 (☎249-3364)

- 강원도 방문 국내외 관광객에게 모바일 기반의 관광지·음식점·숙박 등 관광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모바일 앱 「투어강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강원관광정보 (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를 쉽고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다국어(한·영·중·일) “모바일 앱” 서비스입니다. 특히, 숙박 정보에 대하여는 예약·결재까지 가능
- 또한, 관광거점별 관광객이 궁금해 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문자로 제공할 수 있는 비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관광정보를 제공
 - 6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평창, 정선, 양양), 522개소에 설치
 - 주요기능 : 시티투어버스 정보, 행사정보(KB ISU쇼트트랙월드컵대회 안내)

■ 「투어강원」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애플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투어 강원」 검색 다운로드
- QR코드(아래) 검색, 다운로드
 - ⇒ 강원관광 모바일 앱 「투어 강원」 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쉽고 편리하게 강원도 여행을 즐기세요!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투어강원」 검색, Tour Gangwon 앱설치

4

동계올림픽 대비 전도민 ‘스마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강원도]

관광마케팅과 관광올림픽팀 (☎249-3235)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전 도민 친절마인드 제고 및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스마일 캠페인은 무엇인가요?

- 다시 찾고 싶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미소와 친절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관광객 환대문화 정착과 평창동계올림픽 붐 국내·외 확산을 위한 캠페인

■ 어떻게 실시되나요?

- ‘웃어라 강원도’ 스마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도내 방송사 캠페인을 전개
- 도내 우수축제, 여행주간 등과 연계하여 캠페인 영상을 상영하고 전 도민 대상 관광객 맞이 캠페인을 실시

■ 언제부터 실시되나요?

- ‘웃어라 강원도’ 홍보영상은 2017년 1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3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4월부터 영상을 홍보할 계획
- 영상이 완성되는 4월 이후, 도내 우수축제 및 여행주간과 연계한 관광객 맞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

5

효도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건축과 주거복지팀 (☎249-3464)

■ 효도아파트란?

- 춘천지역 65세 이상 무주택·취약계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쾌적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전용 26㎡) 공급과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기관 역할 : 강원도(보증금 지원), LH(주택 공급), 춘천시(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 효도아파트 현황 : 우두택지 A-1BL 482호 중 100호

■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은?

-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세대당 1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춘천지역 거주 65세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
- 지원자격 : 춘천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2017년 상반기 춘천시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계획

■ 언제 입주 가능한가요? 2017년 12월경



6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장애인 콜센터) 연장 운영

[강원도]

교통과 교통정책팀 (☎249-2768)

-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신청콜(☎1577-2014)을 접수 받아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와 교통수단(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연결해 주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리프트 차량) 이용자 등록 신청 후 아래의 콜 번호로 연락하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함
 - ☎ 1577-2014 : 강원도 내 17개 시·군(원주시 제외)
 - ☎ 033-746-7744 : 원주시
- 콜센터 이용 시간 : 07:30 ~ 22:00 연 중 무휴

《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및 신청 방법 》

◆ 이용 대상자

-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위의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람
 - * 시·군의 조례에 따라 이용 대상 기준(일시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이 약간씩 다름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최초 이용자 신청 방법

-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최초 등록 신청
(정선군은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정선군지회를 통해 등록 신청)

■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변 경 (2017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시간 : 07:30 ~ 22:00 연 중 무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시간: 07:00 ~ 24:00 연 중 무휴 (24:00 ~ 07:00 야간 이용자는 사전 예약 필요)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운영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7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산림청]

산림소득과 산림소득팀 (☎249-3111)

- 난방비 절감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대상

- 주택용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주택 및 법인등록주택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 * 주민편의 : 도서관, 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 휴양림,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 *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의거한 시설

● 지원단가 및 조건(산림청 등록제품 6종만 지원)

구 분	주택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기준단가	▪ 4,000천원	▪ 4,000천원
▪ 지원조건(%)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30 : 40 : 30 (자부담 30% 있음)	▪ 50 : 50 (자부담 없음)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 농산어촌 지역(읍·면) 거주자 또는 화석 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하고자 하는자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농산어촌 지역 거주 불문)
▪ 지원범위 : 개인주택	▪ 개인주택 + 법인등록 주택까지 확대

하자보수(A/S)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나요 ?

- 하자보수(A/S) 주체는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로서, 도내에 32개의 대리점이 운영 중이며, 업체의 하자보수 이행이 어려울 경우(폐업, 연락두절) 산림청 A/S콜센터(080-001-0880)로 하자보수 요청 가능함
- 하자보수 기간 : 무상 A/S기간 3년으로, 경과 시 개인부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8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조건이 변경됩니다.

[산림청]

산림소득과 산림소득팀 (☎249-2731)

-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 지원대상 :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마을공동체·작목반·주민·토지소유자
- 지원기준 : (공동) 마을별 참여가구 당 5백만원 기준, 총사업비 3억원 이내
(개인) 7.5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구 분	기 준 (2016년)	변 경 (2017년)
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보조 (국바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만 보조 / 자부담 10% (국 70%, 지방 20%, 자부담 10%)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생산자단체 추가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생산자단체)
공모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건조·가공사업(공동) (지원자격 : 임산물생산자단체만 해당)
기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목 구입비 지원항목 신설 ▪ 등기대상 시설물 지원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 이행 후 자금 지급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7년 1월

VI

도민 편의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달라집니다. / 85
2. 마약류 관리가 전산화되어 시행됩니다. / 86
3.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 87
4.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기관이 변경됩니다. / 88
5. 소방시설 고장·방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 89
6. 소방시설법령이 이렇게 바뀝니다.(소방시설 적용 강화 등) / 90
7. 생활자격·면허 발급서비스가 개선됩니다. / 91
8.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조끼 착용 및 승선자 명부 작성 의무화 / 92
9. 「수산물가공업통계」 작성이 전산화됩니다. / 93
10. 민방위 이렇게 달라집니다. / 94
11. 예비군 운영 이렇게 달라집니다. / 95
12. 을지연습 이렇게 달라집니다. / 96
13.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달 의무화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97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달라집니다.

[행정자치부]

세정과 체납관리팀 (☎249-2318)

-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제한 등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납처분 절차를 강화합니다.

■ 개정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지방세외수입금은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누적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징수체계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보완이 필요

■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관허사업의제한(제7조의2 신설)
 - * 체납자에 대해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외의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 가능
- 체납자의 명단공개(제7조의3 신설)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
- 징수촉탁(제7조의4 신설)
 - *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여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2

마약류 관리가 전산화되어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과 의약관리팀(☎249-2694)

- 마약류 의약품 제조에서부터 사용까지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마약류 보고의무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보고대상 :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및 마약류 취급 승인자
- 시행시기 : 마약(2017.6.), 향정(2017.11.), 동물의약품마약류(2018.5.) 예정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마약류 전체 취급내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
- 시스템을 통한 보고로 인해 마약류관리대장 기록·보관의무 폐지, 마약 구입서·판매서 폐지
- 보고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적업무 보고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란?

-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사용 투명화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제조에서 유통·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 보고하는 시스템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판매자, 구입자 이중 확인을 통한 유통 투명화
- 환자별 사용량 보고에 따른 오남용 예방

3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과 위생관리팀 (☎249-2967)

-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 어떻게 추진되나요?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 *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 모범음식점,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우선 적용
- 신청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시장·군수 중 선택 신청
- 평가분야 : 객실, 조리장, 개인위생, 소비자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위생등급 평가 위탁기관)
- 평가절차
 - 식약처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평가자 2인 1조로 평가 실시
 - * 위탁기관 1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
- 등급표시방법 : 3단계로 구분 표시(최종안 미확정)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음식점 홍보 효과 및 매출상승 기대, 음식점 인증제도 통합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5월

4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기관이 변경됩니다.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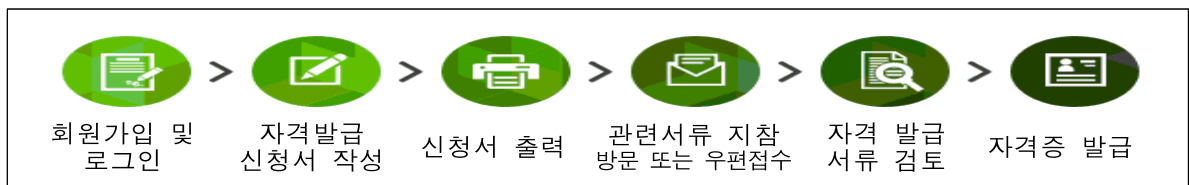
식품의약과 의약관리팀 (☎249-2694)

- 시·도지사가 발급하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합니다.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법적근거 :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 내용 : 지금까지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 자격증을 시·도에서 교부 받았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함(2016.12.13.까지만 시·도에서 발급)

- 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신규 발급자)



※ 신규 발급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www.kuksiwon.or.kr / 1544-4244)

- 신청서 작성 및 출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 후 출력
- 자격증 재발급의 경우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www.mohw.go.kr/044-202-2141)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시·도에서 처리하던 사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자격증 발급에 대한 검증 절차가 더욱 철저해 졌으며
- 간호조무사의 위상이 상향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1일

5

소방시설 고장·방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강원도]

방호구조과 예방팀 (☎249-5147)

- 강원도민 누구나 건축물에 설치된 중요 소방시설 고장·방치행위 발견시 신고할 수 있고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고하나요?

- 근거 :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신고범위
 - 조례상 규정된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중 소화펌프, 화재수신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터미널, 대형 숙박시설
- 신고방법
 - 관련조례 별지1호 신고서식으로 관할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강원도민 누구나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문의·안내

■ 포상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신고사항이 조례상 포상요건에 적합하면 5만원권 전통시장상품권 지급

■ 올해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등 고장방치 행위를 신고사항에 추가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28일

6

소방시설법령이 이렇게 바뀝니다.(소방시설 적용 강화 등)

[강원도]

방호구조과 예방팀 (☎249-5147)

- 6층이상 건축물은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소방시설 적용 강화 및 세분화하여 소방안전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변경되는 소방시설 관련법령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법령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변경내용
 - ① 지상층이 6층이상인 건축물은 용도 구분없이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② 50세대이상 다세대·연립주택(원룸포함)의 지하 공동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 * 물분무소화설비, CO2소화설비, 청정약제소화설비 등(스프링클러 대체 가능)
 - ③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을 세분화
 - 30층이상, 높이 120m이상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강화(기존 2급)
 - 기존 2급 대상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만 설치된 대상은 3급으로 선임 완화

기 준 (2016년)	변 경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 11층이상 건축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 6층이상 건축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자동소화 설비 설치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연립주택(50세대이상) 지하주차장 자동소화설비(물분무등) 설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선임 - 아파트 : 전대상 2급 - 일반대상 : 특급, 1급,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선임 - 아파트 : 30층이상, 120m이상은 1급 - 일반대상 : 특급, 1급, 2급, 3급(감지기대상)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6층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설치 : '17. 1. 28.부터
 - * '18. 1.28.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둬.
- 다세대연립주택 물분무등 소화설비 의무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세분화 : '17. 1. 28.부터
 - * 소방시설 강화 적용은 기존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허가 대상부터 적용될**

7

생활자격·면허 발급서비스가 개선됩니다.

[행정자치부]

총무행정관 고객만족팀 (☎249-2564)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접수창구를 확대합니다.

■ 어떻게 개선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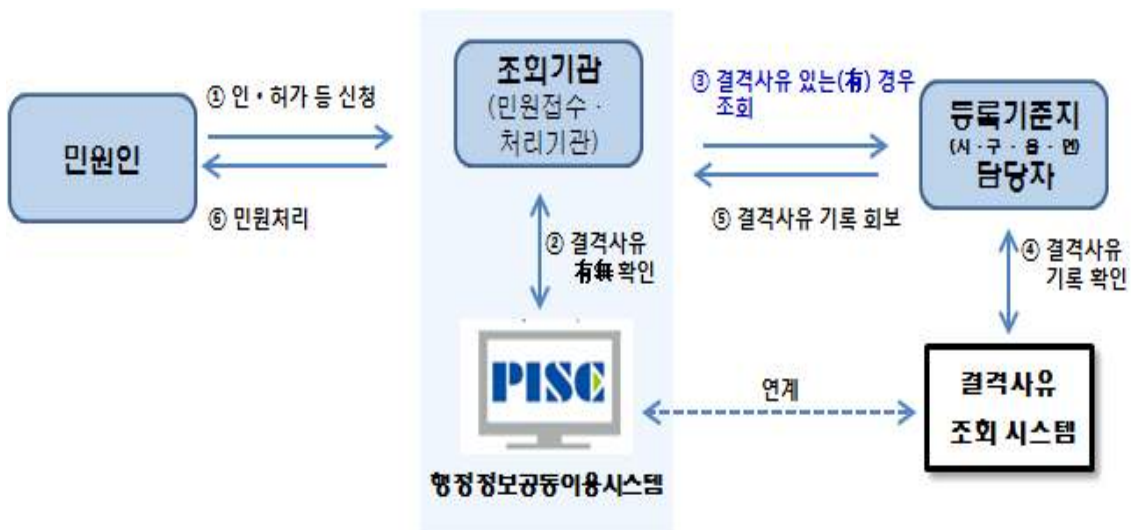
- (기존) 주소지관할 / 교육이수기관 관할 지역에서만 신청·교부
- (개선)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하여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주소지관할 / 교육이수기관 관할 지역에서만 접수·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민원」 접수 창구에서 접수가능토록 확대

■ 해당 자격·면허는 어떤 종류인가요?

- 안마사, 가축인공수정사,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년 12월 22일

8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조끼 착용 및 승선자 명부 작성 의무화

[해양수산부]

어업진흥과 어업지원팀 (☎660-8354)

- 2015년 제주 추자도 해역 낚시어선(돌고래호) 전복 사건과 관련 안전한 낚시어선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시행(2016.11.30.) 되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의무 착용 및 승선자 명부 작성이 시행됩니다.

■ 어떤 제도 인가요?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던 것을 승선자 전원에게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것과 승선자로 하여금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 등을 골자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시행하게 된 제도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제3항 및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제3항, 제4항

■ 어떻게 바뀌나요?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u>필요한 경우</u>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문구 삭제 → 의무착용◦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신분증 제시 포함) ※ 신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안전한 낚시어선 문화정착과 제도개선을 통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년 11월 30일(본격시행 : 2017년 1월 1일)

9

「수산물가공업통계」 작성이 전산화됩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유통가공팀 (☎660-8347)

- 수산물가공업통계 조사와 보고 방식을 「수산정보통합시스템」으로 전산화하고
- 기존에는 시·도별 통계만 공표되었으나, 2017년부터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 공표되어 기초지자체(시·군)의 산업활동 파악과 정책수립이 용이해집니다.

■ 「수산물가공업통계」는 무엇인가요?

- 수산물 제조공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직접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모든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매년 시·도별로 작성 후 통계 자료에 수록 및 공표하는 자료

* 작성대상 : 식품산업진흥법(수산물가공업), 식품위생법(식품 제조·가공업, 단순처리가공업)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집계체계가 전산화 되어있지 않고 다단계로 복잡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조사 보고·집계 전산화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 * 읍·면·동(조사표작성) → 시·군·구(전산입력) → 시·도(검증) →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은 수산물가공업의 생산량과 생산금액만 있고 기본적인 정보인 업종별 업체수, 종업원수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수, 종업원수 등 조사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료 작성 조사표에 수출량, 수출액, 업체수, 종업원수 등을 조사항목에 반영하고, 공표범위는 업체수, 종업원수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및 시도별 통계만 공표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까지 공표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가공업통계 관리시스템」과 「국가통계포털(KOSIS)」 연동하여 시·군·구까지 통계자료 제공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조사항목의 다양화와 시·군·구까지 공표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 파악 및 수산물가공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표준화된 통계 조사표를 통해 수산물 가공업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 상승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3월 1일

10

민방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안전처]

비상기획과 위기관리팀 (☎249-3700)

-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민방위 제도가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방법이 기존 직접교부에서 직접 전달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완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의원”도 이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
- 민방위 주민대피시설(공공용, 정부지원)이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보완·발전
 - 공공용 주민대피시설 주·야 상시대피 가능하도록 개방
 - 정부지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일시체류(1~2일) 대피개념 도입

■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 존	개 선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통지서 전달 방법 - 직접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우편의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 보완 - 정보통신망 이용 시 대원의 동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대원 편성 - 국회의원 등 법정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법정 제외자 삭제 - 법정 제외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용 주민대피시설 해제기준 확대 - 야간 개방이 어려운 시설 ▪ 정부지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일시체류형(1~2일) 전환 - 화장실, 주방시설, 샤워시설, 자가발전기 필수시설 보완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민방위 교육통지서 송달 및 민방위 대원 편성 : 입법예고 중

11

예비군 운영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부]

비상기획과 위기관리팀 (☎249-3025)

- 향토예비군 설치법령 법명 및 조문 개정, 휴가보상 지급 등 제도 개선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법명 개선 : 향토예비군설치법 ⇒ 예비군법(시행령, 시행규칙)

* 조문용어 변경 포함 : “향토”예비군 ⇒ “지역”예비군

■ 어떻게 달라지나요?

- 타법(병역법 등 11개 법령)에 명시된 「향토예비군 ⇒ 예비군」 동시개정

구 분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법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예비군설치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법 ▪ 예비군법 시행령 ▪ 예비군법 시행규칙
조 문	향토예비군	예비군
	“향토”	“지역”

- 휴업보상 지급 등 제도개선(예비군법 시행령)

구 분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휴업 보상금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농촌평균가계비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80%
	지급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절차 근거마련
예비군 치료	부상자 발생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군부대의 장, 수탁 경찰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부대의 장, 추가
예비군복	명찰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질은 황록색), 지질(훈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라 각 군별로 정한 명찰 제식과 동일

※ 휴업보상금 산정기준 시행일자 : 2017. 3. 1.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3월

12

을지연습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안전처]

비상기획과 위기관리팀 (☎249-2291)

- 중앙평가단 평가를 강화하여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훈련을 유도하고, 참여도를 높여 연습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평가심의 후 재훈련기관 선정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실시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도
- 실시범위 : 도상연습, 전시직제 편성훈련, 전시현안과제 토의분야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도별로 분야별 평가점수가 저조한 하위 5~10%를 대상으로 대상기관 선정, 실시

■ 어떻게 달라지나요?

구 분	기 존 (2016년)	변 경 (2017년)
내 용	▪ 시범적용	▪ 확정시행

※ 2016을지연습 재훈련기관(6) :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 재훈련기관 선정은 을지연습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선정
- 재훈련 기관은 자체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결과보고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7년 1월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달 의무화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안전처]

비상기획과 경보통제소 (☎249-3808)

-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달 의무화 제도가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민방위기본법 개정(공포 '16.1.27, 시행 '17.1.28)에 따른 시행령 개정
 -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등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건축물 지정
 -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
- 다중이용 건물의 옥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물 관리 주체로 하여금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제도 마련

■ 어떻게 달라지나요?

- 다중이용 건물 내의 경보전파 대상관리 지침 마련
 - 민방위경보 전달 의무대상 건물조사 및 현황관리
 - * 대상 : 운수시설 및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
 - 관리주체 및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비상연락망 유지
 -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 및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
 -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운영실태 점검 등
-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의무대상 관리주체 홍보·교육 실시
 - 민방위경보 전파방법 교육과 전파계획 등 점검조치 사항
 - 도지사 및 관리주체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준수사항 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개정 시행 : '17. 1. 28.

※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3년간('19.12.31) 유예하고, 설치 전까지는 경보발령 사항을 유선·이동전화로 문자나 음성으로 전달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re are 15 dotted lines in total, creating 16 horizontal rows for text.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re are 15 dotted lines in total, creating 15 rows for text entry.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re are 15 dotted lines in total, creating 15 rows for text entry.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